

재단법인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

제2회 저소득층 생활비 및 장학금지원 사업 안내

1. 지원사업명 :

- (1) 저소득층 및 사회소외계층 생활비 지원 사업
- (2) 저소득층 및 사회소외계층 장학금 지원 사업

2. 지원 대상자 :

(1) 개인

- 최저생계비 이하 기초생활수급대상 가구
-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3조의 2의 의거한 차상위 계층인 가구
- 최저생계비의 150% 이하인 저소득 가구(다문화가정, 독거노인가정, 장애인가정, 다세대가정, 한부모가정 등)

※ 장학금 지원대상은 상기 저소득 가구의 아동·청소년

(2) 단체

- 사회복지 시설 등 비영리 공익기관으로 등록단체
- 전국 자원봉사센터 및 자원봉사 등록 단체, 구호단체 등
(단, 종교시설 및 종교단체, 정당 및 정당부설기관, 사회적 기업, 직능 구성원의 복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는 제외)

3. 생활비 지원금 및 장학금 지원금: 1인당(1단체당) 50만원에서 200만원 이내(현금지급)

4. 지원대상자 추천인원: 000명(생활비 지원대상자 및 장학금 지원대상자 포함)

5. 신청기간 및 방법

- (1) 신청기간 : 2014. 10. 31. ~ 11. 07.
- (2) 선정 및 결과 통보 : 2014. 12. 01. (재단 홈페이지 발표 및 개별 통보)
- (3) 지원금 전달 : 2014. 12. 10. 14시 한국세무사회관
- (4) 신청방법 : 우편 및 방문접수

(우 137-870) 서울특별시 서초구 명달로 105(서초동)

재단법인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 사업담당자 앞

※ 우편접수 및 방문접수에 한함 (마감일 소인까지 인정)

※ 우편봉투에 '생활비 및 장학금 신청서 재중' 표기요망

6. 구비서류

(1) 개인

□ 공통 구비서류

- (개인용) 지원신청서(별첨) 1부.
- 가족관계증명서(주민등록등본) 1부.
- 건강·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(최근 3개월 이상)
- 통장 사본(신청자 본인 및 보호자 명의) 1부.
- 개인정보 수집 및 제공동의서(별첨) 1부.

□ 해당자 구비서류

○ 가족환경 증빙자료

-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: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, 차상위계층 관련 증명서*, 한부모가정증명서, 장애인증명서 등)
 - * 차상위계층관련증명서는 주민자치센터나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해당증명서 발급 후 제출
- 일반 저소득층(차차상위계층) : 부·모 모두의 지방세 세목별과세증명서 (해당사항 없을 경우 미과세증명서, 자격득실확인서 등 증빙자료 첨부)

(2) 단체

- (단체용) 지원신청서(별첨) 1부.
- 신청단체 설립허가서(고유번호증 포함) 사본 1부.
- 개인정보 수집 및 제공동의서(별첨) 1부.
- 통장 사본 (신청단체 명의) 1부.

7. 지원 신청 시 유의 사항

(1) 제출된 서류는 반환 되지 않으며, 현재 타기관에서 지원받고 있는 경우는 제외

(2) 다음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철회

- 신청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였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 받았을 경우
- 단체신청 시 지원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지원금을 사용하거나 부적절하게 지원금을 집행한 경우
- 지원금은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 전달식에서 지급하며, 전달식 참석에 따른 여비교통비는 실비를 별도 지급함.

8. 문의 :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 사무국 (☎ 02-521-9266~7)

